

중국과 인접국 해양경계 획정의 국제법 문제 분석

— 허징징(何晶晶)¹⁾

개요 : 해양경계를 정하는 것은 국가영토를 수호하는 것이자 주권의 완성이다. 또한 국가 해양안전에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자원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인접국가들은 해상에서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시선을 동아시아로 돌려 그 전략의 초점을 아태지역, 소위 해상안보로 전환하여 이로 인한 중국의 해상분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먼저 문제는 중일의 다편다오 주권 귀속이고 두 번째는 남중국해의 황엔다오 쟁의이다. 중국의 해상분쟁을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논리·이성적으로 생각하며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해상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1.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 분쟁

중국의 지리적 면적과 해역은 모두 매우 넓어 육상 대국이자 해상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북쪽은 북한, 한국, 일본이, 남쪽으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해역이 좁아 중국과 인접국가들 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 방법, 구체적인 경계의 획정 부분에서 불일치가 있으며 많은 역사적인 요인으로 중국의 황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상의 해상 인접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안정에 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과 인접국가 해양경계획정을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만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이하 협약)의 규정 및 국제사법 관행에 따라 분석을 하여 중국이 현재 해양경계 획정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기본 원칙 및 경계획정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2. 중국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국제법 해석

해양경계획정의 국제협약과 국가 실무이행에 따라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의 국제사법과 중재안의 구체적 이행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의 기본 법률제도는 양자협상, 형평원칙, 대

1) 한족, 여성, 서북정법대학 민상법학대학원 2016년 석사 졸업생, 연구방향 ; 민사소송법

륙붕의 자연적 연장원칙, 등거리 원칙, 역사적 권리 등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중국이 공개한 법률 문건에서 주장했던 형평원칙을 중일 동중국해 경계확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양경계 확정에서 실제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기타원칙을 사용해야 최고의 만족과 형평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중국의 역사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는 타협할 수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형평원칙은 국제협약과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해양경계확정에 적합한 원칙이다.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대통령은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정책 대통령 선언 제2667호’를 통해 대륙붕이 다른 나라 해안으로 뻗어 있거나 이웃 나라와 같은 대륙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선은 미국과 관련국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 사법과 중재 실천에서 형평 원칙은 끊임없이 보완되고 발전해왔다.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원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은 공정한 결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에서는 형평원칙의 법률 개념은 직접적으로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라고 확인하였다. 모든 판례는 형평 원칙과 공평과 선의 원칙(라틴어, 공평과 선에 따라 ; EX AEQUO ET BONO)의 차이를 강조하고 형평 원칙은 관습법으로 해양의 경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즉 형평원칙을 추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형평원칙을 가능한 결과와 원칙, 규칙과 밀접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륙붕 경계는 해안의 굴곡 변화, 해저 지질 구조, 섬의 분포 위치, 역사적 요인 등 복잡한 해역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형평원칙을 해양경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이 조속히 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이다.

② 구체적인 경계확정에서 실제 사정에 따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자연적 연장의 원칙은 대륙붕 경계확정의 골간이 되는 원칙이라 여겨지고 중국은 복잡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확정에서 자연적 연장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적 연장원칙은 대륙붕 경계확정의 기초인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 주변국이 각자 주장하는 경계확정 원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계확정 문제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연적 연장원칙을 버리고 해안선 길이와 해역 경계확정이 비례를 이루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대륙의 긴 해안선 길이는 한국의 제주도과 일본 부속 섬들의 해안선 길이보다 길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국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확정된 경계선은 자연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원래 설정했던 오키나와의 가장 깊은 해안 경계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한다면 국제 해양경계확정 추세와도 부합하

고 한국과 일본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적극적으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여 국가의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남중국해의 섬들은 예로부터 중국 영토로 중국 인민과 정부가 최초로 발견하였고 최초로 개발·관할했다. 기원전 2세기 한무제(漢武帝) 때부터 중국 인민은 시사군도, 난사군도를 잇따라 발견해 적극적으로 두 섬을 개발하고 경영했다. 당(唐), 송(宋) 이후 중국 인민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에서 생활하였고 어로활동을 하는 등의 생산활동을 하였다. 또한 당시 중국 해군은 그에 상응하는 해양 순항을 한 기록이 있다. 중국은 송(宋), 원(元)나라 통치 시기, 이 섬들을 치엔리창샤(천리장사;千里長沙)와 완리스탕(만리석당;萬里石堂)으로 명명했다. 명·청 시대 정부는 이미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광둥성 징저우(瓊州)부 관할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난사군도 중 가장 큰 타이핑다오(太平島)는 대만이 군대를 파견해 주둔시켜 왔다. 국제법상 시제법(Intertemporal law) 원칙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역사적 수역에 대해 마땅히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닌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필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